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120호 2015. 10. 07.(수)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90호 인천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9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92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	-	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93호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94호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	-----	1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95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96호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한마을 만들기 조례	----	1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9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98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99호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30

⇒ 뒷면 계속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0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	3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01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3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02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 -----	3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03호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	3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04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	4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05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5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06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07호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5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08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6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09호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 -----	7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10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 -----	7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1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8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12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0

⇒ 뒷면 계속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864호 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폐지
규칙 ----- 93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86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 94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55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95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355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 9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367호 인천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 공고 ----- 99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290호

인천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서구청 산하기관(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을 말한다.
2.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
4.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그 밖의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5.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원도급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6. "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7. "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8.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마땅히 청산하거나 지급해야 함에도 청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지급하지 않은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사업)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종합공사
2.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
3.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및 문화재수리공사
4.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용역사업(학술용역 제외)
5.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본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를 통하여 체불임금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상생협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원도급자·하도급자의 책무) ① 원도급자·하도급자는 구청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하도급자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구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하도급대금 직불제) ① 구청장은 하도급대금의 지급지연, 어음지급, 이중계약, 체불임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대상사업에 대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현장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표준하도급계약서) 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제9조(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구청장은 원도급자로부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도급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도급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등의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구청장은 사업주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수급인을 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임금 등 우선지급 서약서)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을 체결할 때 별지 제1호 서식의 임금 등 우선지급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대가지급의 사전예고 등) ① 구청장은 하도급자 및 건설근로자의 요청이 있거나 하도급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예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급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는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 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지급 사실과 사전예고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신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하도급 부조리에 대한 시민 신고를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주관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하도급 부조리에 대한 신고방법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되, 그 접수 및 처리절

차는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사무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협조관계 구축)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자 및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제출)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관급공사 원도급자 및 그 하도급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제3조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29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도시농업 지원을 통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서구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 의식 함양과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취미·여가·학습 또는 체험적 성격의 농사활동을 말한다.
2.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 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5. “도시농업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6.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거나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계획
2. 도시농업 정책 개발·추진 및 홍보 방안
3. 도시농업 관련 전문가 양성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 도시농업인은 친환경농업을 실시하고,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처리하여 생활환경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1명
2. 구 소속 도시농업 업무 담당과장 1명
3.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농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육성 업무담당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조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도시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⑧ 위원회는 민관협력 거버넌스(governance)를 통한 원활한 도시농업 추진을 위하

여 산하에 도시농업 정책협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둘 수 있다.

1. 소위원회는 구 소속 도시농업 업무담당과장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소위원회는 구 도시농업 정책의 건의 및 민관협력방안 등을 협의한다.
3. 기타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의 정례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도시텃밭의 조성 등) ① 구청장은 제2조 각 호의 범위 내 각종 유희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등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조성 및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③ 텃밭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8조(도시농업 육성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단체·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사업
2.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지원사업
3. 도시텃밭, 상자텃밭, 옥상텃밭의 조성 및 보급사업
4. 학습·생태 체험텃밭 보급 및 교육사업
5. 텃밭농장의 지원사업
6. 공영 또는 민영도시농업농장의 조성 및 지원사업
7.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활원예활동 보급 및 지원사업
8. 도시농업공원 지원사업
9.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도시농업 체험 및 교육
10. 그 밖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우수사례 발굴 등)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저변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참여자 중 우수사례 도시농업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292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위원회”를 “심의회”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구정조정위원회”를 “조례·규칙심의회”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구정조정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293호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인천광역시서구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명예구민증”을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으로, “인천광역시서구의회”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호서식”에 의한다”를 “제2호서식”을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조서등”을 “조서 등”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권리와 의무부담)”을 “(예우 및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명예구민이 인천광역시 서

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할 경우 행정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을 구 주관 행사 및 구가 지원하는 국·내외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

제5조 중 “받은자는”을 “받은 사람은”으로 한다.

제6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를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294호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법인)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구가”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자중에서”를 “사람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0미만으로”를 “50 미만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추천한 자”를 “추천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추천한 자”를 “추천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정관으로”를 “정관의”로,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추천한 자”를 “추천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인”을 “7명”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 2인”을 “사람 2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 3인”을 “사람 3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 2인”을 “사람 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 해당하는 자”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퇴직한 자”를 “퇴직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과 공단의 정관에 의한다”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과 공단의 정관을 따른다”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제4항의 규정에”를 “제4항을”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아닌 자”를 “아닌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를 “피성년후견인, 피한

정후견인과”로, “아니한 자”를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정지된 자”를 “정지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자이였음”을 “사람이었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정관이 정하는 바에”를 “정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3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6조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7조 중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정하는 정관에 따라”로, “또는 재판 외의”를 “또는 재판 외의”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26조제2호 중 “문화체육”을 “문화·체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노인복지관”을 “노인복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 사업

8. 그 밖의 사업<중전 제7호에서 이동>

제27조제1항 중 “또는 기타”를 “또는 그 밖에”로, “위탁계약에 의한다”를 “위탁

계약을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를 “및 제2항에 따라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로 한다.

제30조 중 “회계연도에 의한다”를 “회계연도를 따른다”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개시전까지”를 “개시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66조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9조 중 “의하거나”를 “따르거나”로 한다.

제40조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로 한다.

제41조 중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을 “「지방공기업법」”로 한다.

제42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를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을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국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갖춘 자”를 “갖춘 사람”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5인 이상 10인”을 “5명 이상 10명”으로, “호선한다”를 “소관 업무 담당 실·과장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한마을 만들기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296호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한마을 만들기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마을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한마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직면하는 재난·범죄·생활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마을을 말한다.
2. “안전증진”이란 모든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 “주민”이라 한다)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체계를 제공하는 과정으로써, 개인 및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최적의 안전 상태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안전한마을 만들기”란 안전한마을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모든 유·무형적 사업과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마을

구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증진을 위하여 각계 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한마을 만들기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범죄·생활안전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① 구청장은 안전한마을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마을 만들기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한마을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3. 안전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설비개선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마을협의체 구성과 안전증진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에 관한 사항
5. 안전용품 보급 등 홍보사업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6. 안전 관련 기관, 법인, 단체(이하 “기관·단체”라 한다)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안전한마을 만들기” 추진 평가 및 지표설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별표1로 정하는 “안전한마을 만들기”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중 적합한 사항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안전한마을 구현을 위하여 구민의 안전증진과 안전한마을 만들기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한마을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한마을 만들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한마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안전총괄실장, 홍보미디어과장, 여성보육과장, 도시재생경관과장이 되며, 협의회의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할구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담당과장
3.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담당과장
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5. 안전한마을 만들기 추진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안전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한마을 만들기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한마을 만들기 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협의회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한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의 발전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3. 안전한마을 만들기 추진에 관하여 관련 기관과의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안전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한마을 만들기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전총괄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에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협의회는 서기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작성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련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한마을 만들기 대상사업(제4조 관련)

구 분		주민참여 가능 영역	비 고
재난안전형	안전관리 프로그램형	- 집중호우 대비 생활주변 빗물받이 점검 및 청소 -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지역 등 재해정보 신고·제보 - 집중호우, 태풍 등 풍수해 발생 후 마을 청소하기 등	
	물리적 환경정비형	- 폭염 시 무더위쉼터 운영지원 - 강설 시 생활주변 눈치우기 - 시설물 사고전조 감시·신고 및 안전조치 등	
범죄예방형	안전관리 프로그램형	- 범죄취약지역 밤길안전을 위한 감시·순찰 -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 정비사업지역(재개발), 빈집, 공사장 등 취약지역 점검 -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지도 및 여성안전지도 만들기 등	
	물리적 환경정비형	- 자율방범순찰 운영지역, 범죄발생지점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 사각지대용 방법용 CCTV, 보안등 보강 설치 - 주택가 골목길, 놀이터, 공원 등 취약지역 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등	
교통안전형	안전관리 프로그램형	- 등하굣길 안전지도·계몽(Walking School Bus 등) - 교통사고(자동차, 자전거 등) 취약지역 교통안전시설 점검 - 자동차 교통안전을 위한 카시트 보급·대여 등	
	물리적 환경정비형	-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소규모 안전횡스 설치 - 시인성 확보시설 설치 - 횡단보도 전방에 미끄럼방지 켈리포장, 야간등화 등	
생활안전형	안전관리 프로그램형	- 우리동네 마을안전지도 만들기 - 지역안전을 위한 주민모임 활성화 및 자율조직 만들기 - 동네이웃 친구맺기(유사 시 상호보호) - 지역안전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 안전마을 주민학교 운영 - 전시회, 콘테스트, 안전문화거리축제, 공연, 토론회 등 행사 개최 - 우리동네를 둘러보고 위해요소 조사·발굴하기 정례행사 또는 마을안전감사단 운영 등	
	물리적 환경정비형	- 마을안전감사단 운영, 취약계층 안심보험 지원 -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개선 - 교육·홍보자료 제작·배포 등	
기타 안전한마을 만들기 사업		- 재난안전형, 범죄예방형, 교통안전형, 생활안전형 외에 공모사업에 따른 기타 안전한마을 만들기 사업 등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29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1인을 포함한 5인”을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각호의 규정에 의거”를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2인의 위원은 인천광역시서구 의회의원”을 “2명의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규정에 의거”를 “각 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3인중”을 “3명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인중”을 “2명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 의회의원”을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규정에 의한 승인”을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속5급”을 “소속 5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소속”을 “구의회 소속”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임기내로”를 “임기 내로”로, “재직중인”을 “재직 중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을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으로, “전임자의 잔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회의 회의등)”을 “(위원회의 회의 등)”으로 하고,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8조제7항의 규정”을 “제8조제7항”으로, “제8조제12항의 규정”을 “제8조제1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의2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3조 내지 법 제29조”를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실조사등을”을 “사실조사 등을”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의회에 보고)”를 “(구의회에 보고)”로 한다.

제10조 전단 중 “시행규칙」의 규정”을 “시행규칙」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298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3조 중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서구”를 “투표인 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관계 법령에 따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의2제4항에 따른”으로 하

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 중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제2항에 따라”로, “주민투표청구권자”를 “주민투표 청구권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를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서”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를 “청구인 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를 “주민투표 청구권자인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를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서”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으로 한다.

제7조 중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청구인서명부”를 각각 “청구인 서명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 서명부”로 한다.

제9조 중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를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제3항에 따라”로, “주민투표청구서”를 “주민투표 청구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사실”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 중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 서명부”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을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학계, 공인회계사, 사회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제9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를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 대표자”로, “청구인대표자”를 “청구인 대표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으로,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를 “14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7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2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휴대용확성장치”를 “휴대용 확성장치”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제15조제3항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제4호서식에 의한다”를 “제4호서식을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 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을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을 따른다.

제16조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제1항에 따른”으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을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299호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별 세부내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를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
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

제7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새마을운동 조직 예산지원에 따른 사업별 세부내용(제3조 관련)

호	사업명	세부내용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경지 경작을 통한 불우이웃 돕기 ○ 사랑의 집 고쳐주기 ○ 사랑의 김장나누기 ○ 사랑의 연탄나누기 ○ 다문화가정 송편빚기 ○ 다문화가정 전통혼례식 ○ 어르신여름챙기기(삼계탕 대접) ○ 청소년 농촌봉사활동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0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출된 용자금 중 미상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01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 (이하 “장애인” 이라 한다) 이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 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서비스” 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자립생활 체험홈” 이란 자립생활 경험이 부족한 장애인이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5. “주거서비스” 란 체험홈 설치 운영, 주택 개조사업 지원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제4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장애인 및 보호자, 그 밖의 관계인은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동의(발달장애인의 경우 부모나 성년 후견인, 법적 대리인의 별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장애인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동료 간 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
2.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3. 활동보조서비스
4. 주거편의개선 등을 위한 주거서비스
5. 자립생활 교육 및 기술훈련
6. 장애인의 접근권 향상을 위한 이동서비스
7. 장애인 가정의 자녀 양육활동
8. 장애인 취업에 필요한 교육 및 구직 서비스
9.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
10. 장애인 재난예방 및 안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11.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업

제7조(자립생활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로 같음하되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여 조사한다.

제3장 지역사회 전환 및 주거생활 지원

제8조(인권 및 자립생활 교육) 구청장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자립생활 체험홈) 구청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주거생활의 지원) 구청장은 자립생활 중인 장애인 및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임대아파트 포함)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를 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02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아래와 같이 한다.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검단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92번길 18
석남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산로 137번길 6-12
심곡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31번길
신석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29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03호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 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또는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
2.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제3조(위원회 구성) ①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1명
 2. 중고등학교 역사교사로 10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3.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인류학, 건축학, 관광, 종교, 언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5. 향토문화 연구 및 활용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6. 서구사 등 역사 관련 서적의 집필에 참여한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위원회의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재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2. 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3. 문화유산의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그 밖에 문화유산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문화유산 지정) ① 문화유산의 지정은 제2조 유·무형 자료 및 유산 등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으로 지정 받으려는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으로 구청장이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내 주어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서를 내 주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자 지정) ① 구청장은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향토문화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불확실한 문화유산은 소재지 동장 또는 문화유산의 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따로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이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구청장은 관리자를 지정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관리자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8조(지정의 해제)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문화유산으로서 원형이 변형되거나 손실된 경우
 3.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교부된 지정서를 반환 받아야 한다.

제9조(문화유산의 종류) 구청장은 제6조의 문화유산을 향토유형문화유산, 향토무형문화유산, 향토기념물, 향토민속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고시) ① 구청장은 문화유산을 지정 및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문화유산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향토유형유산 또는 향토무형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 성명
 3. 향토무형유산인 경우에는 보유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4.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

제11조(보존·관리)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자는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보호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문화유산의 지정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판 또는 경고판 등의 안내표지를 문화유산 주변에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문화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문화유산 보존 문제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점검·기록) ① 구청장은 문화유산을 연 1회 점검하여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문화유산의 지정과 관리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경비보조)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경비보조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인천광역시 서구 제 호

향토문화유산지정서

- 명 칭 :
- 소재지 :
- 수 량 :

위를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별지 제4호서식]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관리자 지정서

관리자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위 관리자를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관리자로 지정합니다.

1. 향토문화유산 명칭 및 수량
2. 관리기간
3. 관리내용
4. 관리조건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별지 제5호서식]

(앞면)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관리대장

관리번호					
명 칭	한 글			한 자	
	영 문				
분 야			재 료		
구 조					
규격/크기					
수량/면적			연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관 리 단체(자)	주 소				
	단체명 (성명)		전화번호		
내 용 (연혁, 유래, 전설)					
관 리 상 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연월일	내 용			

(뒷면)

향토문화유산명 :

명 칭		명 칭	
(사진)	(사진)		

실 측 도

위 치 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04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9항 및 제43조의3 규정에 의거”를 “「주택법」 제43조제9항 및 제43조의3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아파트, 연립, 다세대)단지내의”를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지 내의”로 한다.

제3조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4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단지내”를 “제43조제9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단지 내”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

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 유지 보수
 4. 상·하수도 시설 관리(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시설)
 5. 보안등 및 지하주차장등 시설 보수
 6.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공동화장실, 파고라, 단지경계 울타리, 벤치, 체육시설 등)
 7.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8. 부설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9.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처리시설 및 친환경 시설의 설치·개선
 10.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개선
 11.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 시설 설치·개선
 1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3의2에 따라 안전등급기준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을 받아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여 제7조제2항의 심의를 받은 공동주택
 13.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옹벽 등의 보수
 1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보수
- 제4조의2제2항 본문 중 “사용검사일로부터”를 “사용검사일부터”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된”을 “사용검사일부터

10년 이상 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용검사일로부터”를 “사용검사일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동종사업”을 “동종 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자체부담 사업비포함)”을 “(자체부담 사업비 포함)”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의한”을 “제2항의”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 사항”으로 하고, “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판단되는 사항”을 “토의에 붙이는 안건”으로 한다.

제8조 조명“심의회”의 구성등”을 “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의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13인”을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인”을 “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번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관계전문가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관계 전문가 등에 대

하여는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
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주택담당”을 “공동주택관리센터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등”을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
으로 한다.

제11조 중 “종료후”를 “종료 후”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를 “조례」
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관계법령 등에 의거”를 “관계 법령에 따라”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한다.

제13조 중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을 “예산편성 및 관리는
다른”으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조례를 따른다”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재
무회계 규칙」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05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육성) ① 법 제6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공동작업장 운영
2. 시각장애인 경로당 안마서비스 사업

3. 시각장애인 기초 재활시설 교육
4. 장애인 점자교육, 보행교육, 신문보급사업, 전산교육, 컴퓨터보급, 컴퓨터 수리, 보장구 수리
5. 장애인 체육대회, 워크숍, 인권개선 사업
6. 장애인 문화누리(체험, 관람)사업
7. 그 밖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② 장애인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단체의 사업현황 및 사업효과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의 날 행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기념행사 및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리는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장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 사회통합 활동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이 사회통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률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률과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06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보호를 위한”을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으로 하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으로 한다.

제4조 중 “보호”를 “안전”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이”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로 “담당국장”을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1호 중 “자”를 “사람”으

로 한다.

제8조제6호 중 “제3조 제4항”을 “제3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으로 한다.”를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소관 부서 국장에게 위원장직을 위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동운영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인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위원장”을 “운영위원장 또는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아동·여성 보호 담당과장”을 “아동·여성정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공동실무사례협의회 구성)

지역연대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공동실무사례협의회를 둔다.

제14조(공동실무사례협의회 업무)

공동실무사례협의회는 해당 지역연대 및 이에 협력하는 인근 지역연대 관할지역내

아동·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15조(공동실무사례협의회 회원)

- ① 제7조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여성아동 보호 및 복지 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 간사, 전문가를 공동실무사례협의회원으로 한다.
- ② 공동실무사례협의회장은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겸직한다.

제16조 (사무국)

- ① 공동실무사례협의회 업무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과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 전담인력은 아동·여성폭력 피해자보호 전문가로 임용한다.
- ③ 사무국 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기초지역연대 일반관리사무
 2. 공동실무사례협의회 운영지원
 3. 인근 기초지역연대 지원 및 연락
- ④ 사무국의 운영은 지역연대 참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사무국 운영에 관한 규칙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연 2회”를 “연 1회”로 한다.

제23조제4호 중 “사례관리팀”를 “실무사례협의회”로 한다.

제25조 중 “사례관리팀”를 “실무사례협의회”로 한다.

제26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사례관리팀”은 “실무사례협의회”로 하고, “사례관리팀장”은 “실무사례협의회장”으로 한다.

제29조 중 “사례관리팀원”은 “실무사례협의회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07호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로 한다.

제2조 중 “구는”을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는”으로, “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을 “「양성평등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관계 법령의”로 한다.

제3조 중 “구민”을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중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를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단체에 대하여”를 “단체에”로 한다.

제9조 중 “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서구여성단체협의회 운영사업
2.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사업
3. 양재수강교실 운영사업
4.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5. 저소득층지원 기금마련 사업
6. 환경정화활동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

제10조 중 “여성주간행사”를 “양성평등주간행사”로 하고,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6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주간”을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제14조 중 “㉠”은 삭제하고, “남녀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15조 중 “㉠”은 삭제하고, “남녀가”를 “양성이”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여성 의원

제22조제3항 제1호부터 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자”을 “사람”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임자”를 “전임자 임기”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여성업무”를 “여성정책업무”로 한다.

제27조 중 “관계전문가”를 “관계 전문가”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전이라”를 “임기 전이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2이상”을 “2 이상”으로 한다.

제29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30조 중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를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34조제3항 중 “기타수입금의 범위 안”을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로 한다.

제35조제1호 중 “여성복지업무”를 “여성정책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여성복지업무”를 “여성정책업무”로 한다.

제36조 중 “재무회계규칙」”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08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및 제144조,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의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이하 "센터"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관료 또는 이용료를 말한다.
4. "입장권"이란 문화공연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입장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강습료"란 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 등을 수강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수탁자"란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7. "개시일"이란 센터에서 정하는 이용기간의 초일을 말한다.

제3조(위치) 센터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대로 26(경서동, 청라복합문화센터)에 둔다.

제2장 센터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책임 하에 관리·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절한 관리 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토록 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
2.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3.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운영능력을 보유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센터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 위원으로 성

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비용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탁자에게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주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을 위한 예술 공연·전시
2. 주민의 체육증진 및 후생복지시설 운영
3. 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교양 교육
4. 주민의 사회참여 및 복리증진
5.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강화
6. 그 밖의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장 시설의 사용

제8조(대관의 범위) ① 센터의 시설 및 설비 중 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실, 강의실, 다목적 홀
2. 부속설비 :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그 밖의 문화예술 공연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 기기와 냉·난방시설

② 구청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관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수강, 수영장을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과 동시에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② 시설 대관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교육수강, 수영장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 접수순위 또는 추천제 등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이를 허가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허가 우선순위)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센터가 주최하여 진행하는 문화공연·전시·그 밖의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 행사
3. 공연장 대관의 경우 문화예술 공연, 전시
4.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사용의 제한 및 허가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시설의 사용 제한 및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가. 종교행사 및 상품판매를 위한 행사
 - 나. 예술성이 배제된 정치적 목적의 일반 기념 행사
 - 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단체의 단순 발표 행사
 - 라. 기업체 또는 사설단체에서 진행하는 기념식, 시상식 등 공공성이 배제

된 공연 행사

마. 연 2회 이상 공연장 사용 취하 또는 작품변경을 한 경우

바.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 대관 허가 승인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

아. 대관 승인 후 기일 내 계약 미체결 또는 사용료 미납(체납) 시

자. 센터의 승인 없이 과도한 교환권 발행으로 지정좌석을 초과한 경우

차.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카.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때

제12조(사용시간) ① 센터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하며,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1. 공연장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라. 심야 : 22:00 ~

2. 체육시설

가. 조기 : 06:00 ~ 09:00

나. 오전 : 09:00 ~ 13:00

다. 오후 : 13:00 ~ 18:00

라. 야간 : 18:00 ~ 22:00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13조(입장료 징수) ① 센터의 입장료는 공연장에 입장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
되, 공연·전시 또는 행사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입장료를 달리 징수 할 수 있다.

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지정 예매처에서 예약 판매
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예매처는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
여 운영하며, 이 때 발생하는 판매 수수료는 지정 예매처 요율에 따른다.

③ 센터에서 발생하는 입장료 수입은 서구 금고에 익일까지 입금하되, 수
입금 관리상 필요한 경우 은행 계좌에 예치 후 월 단위로 서구 금고에 입
금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및 강습료 징수) ① 센터의 사용료 및 강습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강습료는 시설 등(수영장, 다목적실, 공연장, 전
시설, 편의 수익시설 냉·난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시설 대관료, 교육 수강료 및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③ 제9조에 따라 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다.

1. 문화·체육 강습료(교육 수강료, 수영장 이용료 등)는 신청과 동시에 징수
2. 시설 사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
하여야 하며, 허가일로부터 사용일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
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당일에 허가내용을 변경하
는 경우의 사용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료를 제2호의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
하였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고지서를 재발행하여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 ④ 센터에서 발생하는 사용료 및 강습료는 서구 금고에 익일까지 입금하되, 수입금 관리 상 필요한 경우 은행계좌에 예치 후 월 단위로 서구 금고에 입금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연 행사 및 경기
2.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센터가 필요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무료 공연, 단 유료 공연에 대하여는 투자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문화예술 공연·전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무료공연·전시
3. 구청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순수예술활동 단체가 주관하는 공연·전시

제16조(입장료 및 강습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입장료 및 강습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 헬스장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00분의 30,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및 노인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회원제 운영, 이벤트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공익 목적으로 주관하는 공연 행사 및 전시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연의 특성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7.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②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수영장 이용시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입장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입장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반환한다.

1. 센터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당일 시설을 계속 사용할 수 없을 경우
2.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3. 입장권 구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공연하루 전 17시까지 예매처 방문 및 유선 상으로 환불 요구 시

제18조(사용료 및 강습료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반환한다.

1. 천재지변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구의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시설의 사용료(공연장 및 전시실)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

가. 사용예정일부터 10일 전까지 취소 시 :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부터 7일 전까지 취소 시 : 납부된 사용료의 70퍼센트 반환

다. 사용예정일부터 3일 전까지 취소 시 : 납부된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라.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시 :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음

② 납부된 강습료의 경우 강의개시 전날까지 수강의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

는 전액 반환하고, 강의개시 후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월의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강습료를 공제 후 반환한다.

제19조(센터의 임대)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임대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및 제20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1조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강사 배치)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청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필요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입장 제한)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회원모집 등) 센터에서 개최하는 문화·체육 사업 활성화를 위해 회원을 모집 할 수 있다.

1. 공연장 회원은 유료회원 및 무료회원으로 구분하고, 회원기간은 가입일 부터 1년으로 하며, 연회비는 관장이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2. 체육시설 회원은 정기과목 수강자에 한해 회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회원 모집은 강좌별 강사 수 및 시설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모집하여야 한다.
3. 회원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할 경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가.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하였을 경우

나. 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이용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다. 그 밖에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고의로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우선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휴관) ① 회관은 연중무휴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장이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매월 특정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관장이 제1항에 따라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위탁관리에 관한 것 이외에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청라복합문화센터 사용료(대관료,이용료) 및 강습료 징수 기준 (제14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가. 일반기준

- 1) 공연 대관 1일이라 함은 09:00 ~ 22:00 까지를 말한다. 단, 체육시설 및 그 밖의 시설 기본 사용시간은 1회 1시간으로 한다.
- 2) 토·공휴일의 경우 총 시설 사용료에 20퍼센트를 할증 적용한다.
- 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 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사용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본 대관료 할인 및 감면 기준은 다음을 따른다.
 - 가) 공연장의 평일 사용에 한해 09:00~12:00 이용시 공간 사용료의 40퍼센트를, 13:00~17:00 이용시 공간 사용료의 30퍼센트를, 09:00~17:00 이용시 공간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한다
 - 나) 장기대관(10일 이상의 대관)의 경우 실 사용료에 한하여 1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 적용할 수 있다(공간 사용료에 한함, 장비 사용료는 제외함).
 - 다) 서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나 서구 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기본 대관료에 20퍼센트를 할인 적용할 수 있다(공간사용료 및 장비 사용료 포함)
 - 라) 3개 항목 이상 할인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
- 4) 개별기준 중 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한다.
- 5) 공연 종료 후 공연 대관 시간 내에 철수를 완료할 경우에는 추가 대관료를 받지 아니한다.
- 6) 순수예술은 국악, 풍물, 순수음악, 클래식, 연극, 무용, 재즈, 오페라를 말한다. 다만, 공연의 규모 및 상업적 의도가 명확할 경우에는 뮤지컬 대관료를 적용한다.
- 7) 준비 대관은 무대설치, 연습, 리허설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 8) 시연회 및 공개 리허설은 공연 대관료에 준한다.
- 9) 냉방비, 난방비는 1시간 당 연료비(전기료 포함) 시가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 사용자 의무 가동 시간 : 3시간(예열시간 포함)
 - 냉방 6월 ~ 8월 까지, 난방 11월 ~ 3월 까지 의무신청으로 하되, 기온 급변시 사용자는 관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10)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가 10퍼센트를 부담한다.
- 11) 부대시설 사용료와 개별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 개별기준

-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료

(단위 : 원 / 1회)

구분 / 시설명		단위 (부가가치세별도)	순수예술	뮤지컬	대중음악 / 행사	비고
공연장	공연대관	1일	400,000	600,000	800,000	
	연습/준비	오전	80,000	100,000	140,000	
		오후	100,000	120,000	160,000	
		야간	120,000	140,000	180,000	
		철야(3시간)	300,000	320,000	360,000	
전시실		1일 (09:00~22:00)	100,000	- 분할대관 시 대관료의 50퍼센트 적용 - 1일 대관료의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 당 30퍼센트 가산		

※ 순수예술 : 국악, 풍물, 순수음악, 클래식, 연극, 무용, 재즈, 오페라

2. 문화·체육프로그램

가. 교육수강료 : 1시간 기준 4,000원 범위 내(단, 교재비와 재료비는 별도)

나. 수영장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성인	중·고생	초등생이하		
수영	강습 (월이용)	개인	52,000	44,000	38,000	○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이 동일 소속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자를 말함. ○ 월 회원이라 함은 1개월을 단위로 입장하는 사람을 말함 ○ 1일에 1회만 출입하는 기준 금액임.
	자유이용 (월이용)	개인	42,000	33,000	28,000	
	1일이용	개인	5,000	3,000	2,000	
		단체	4,000	2,500	1,500	

【 비 고 】

○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물함사용료 월5,000원 범위 내, 열쇠분실 교체료 7,000원, 회원카드재발급수수료 추가비용을 실비로 받을 수 있다.

○ 사용료의 할증

- 1) 토·일·공휴일은 사용료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안에서 할증할 수 있다.
- 2) 특화 프로그램은 조례 제14조 사용료 별표 제2항 문화·체육 프로그램 나목 수영장 사용료 조항에도 불구하고 특성에 따라 강습료를 별도 산정하여 받을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09호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태권도 진흥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을 설립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구성) ①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이하 “시범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단장을 보좌하고 원활한 실무처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협회장을 부단장으로 한다.

② 시범단에 선수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감독 1명과 코치 2명을 둔다.

③ 시범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45명 이내로 한다.

제3조(단원의 응모자격 및 위촉) ① 단원의 응모자격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만 10세에서 만 18세 이하의 학생 및 청소년으로 한다.

②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하며, 전형과정을 태권도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시범단 및 단원의 의무)** ① 시범단은 태권도를 통해 국민의 심신단련에 이바지하고 구의 홍보사절로서의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단원은 시범단과 본인의 기술향상에 힘쓰고 품위유지와 단원 상호간 화합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단원은 시범단의 연습과 각종 대회에 성실하게 참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 및 코치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시범단은 영리목적이 아닌 각종 행사 또는 사회 봉사활동 등에 사전에 구와 협의한 후 참여할 수 있다.

제5조(감독, 코치 위촉) 감독, 코치는 태권도 선수 출신 또는 태권도를 전공하고,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시범단 지휘 능력이 있는 자를 단장이 위촉한다.

- 제6조(위촉기간)** ① 감독, 코치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단원은 위촉이 해제되지 않는 한 그 자격을 유지한다.

- 제7조(감독, 코치의 의무)** ① 감독은 시범단원들의 체력과 경기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코치는 감독을 보좌한다.

제8조(해촉) 단장은 단원(감독, 코치 포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 기간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는 경우
3. 구를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와 재학 중인 학교 모두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의 경기력 하락 등 시범단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원) 구청장은 시범단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훈련에 소요되는 물품 및 경비
2. 훈련에 필요한 여비
3. 대회출전 및 시범공연에 소요되는 출전비와 여비
4. 급식비·간식비 및 피복비
5. 감독과 코치의 실비보상금
6. 보험가입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의 시범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10조(수상) ① 각종 대회 등에 참가하여 수상하는 상장과 상패 등은 구에 귀속한다.

② 부상품 및 사례금은 단장의 허락을 얻어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시범단을 위탁 관리토록 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태권도시범단은 본 조례로 조직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사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명시적 근거 규정 신설 필요
-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진흥 규정 신설 필요
- 여러 차례 개정 결과 삭제된 조항이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

주요내용

-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진흥 조항 신설
- 문화예술행사 보조금 지원 조건 신설
- 전체 체제(장 및 조항) 정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10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2장 문화예술의 진흥

제4조(시책과 장려)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문화예술 교류
3. 각종 문화예술인협회 및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육성
4. 축제 및 그 밖의 지역주민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3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제6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및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6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공동주택 (다만, 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제4장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제7조(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영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의 설치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주는 구청장에게 착공 후 9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별지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인천광역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미술작품 설치 확인 및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2년마다 정기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문화·예술 축제 지원

제9조(구민축제 개최) 구청장은 구의 정체성 확립과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구민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축제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결집하고 민간주도의 행사개최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축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축제위원회의 기능) 축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구의 이미지 부각과 지역축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전 구민의 참여확대를 통한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에 관한 사항
4. 축제 명칭과 그 내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축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항

제12조(축제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축제위원회는 축제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③ 위원은 문화복지국장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명과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그 밖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4. 축제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할 때

제17조(간사,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 ② 간사는 담당과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 ③ 간사는 위원회와 관련된 사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며 대내적인 사무를 담당한다.

제18조(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 구청장은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축제운영의 대표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위원회의 승낙을 받은 지역의 대표인사와 축제전문가를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축제위원회는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전체회의 또는 개별적으로 고문과 자문위원들에게 축제에 관한 의견을 들어 축제 내용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 ①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결정사항의 효

올적인 집행을 위하여 축제의 종류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축제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18조제1항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분과위원회에 추가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되,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 제14조의 규정은 분과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⑥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자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20조(사업비의 보조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의 운영과 축제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의 운영과 축제행사 관련 예산 집행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2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2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축제위원회는 매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축제 개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축제위원회는 축제 종료 후 사업정산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축제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축제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3조(협조)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에서 축제와 관련하여 인력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절차와 심의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1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도시관리국장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구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를 초과하

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3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할 수 없다. 다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다른 규정에 따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위촉된 위원은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회의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조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안건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반복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
 4.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 ③ 제2항의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제5항에 따른 회피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에 안건의 심의·자문을 요청한 자는 제2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⑤ 위원이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 대하여 회의개최일 2일 전까지 회피하여야 한다.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제6조제2항의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0조제1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제1항”을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으로 한다.
제11조 중 “직무수행상 알게된”을 “직무수행 상 알게 된”으로 하고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위원중에서”를 “위원 중에서”로 한다.

제14조 중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한바”를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16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동 의 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도시건축공동)위원으로 위촉(임명)(임기 2년, 20 .00.00 ~ 20 .00.00)됨을 동의합니다.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근 무 처 :
- 직 위 :
- 이 메 일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 택 :
- 사 무 실 :
- 이 동 전 화 :
- 팩 스 :

20 . 00. 00.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청 렬 서 약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정직·공정·성실하게 위원회의 자문·심의과정 또는 기타 직무를 수행함은 물론, 반부패·청렴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자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00. 00.

- 근 무 처 :
 직 위 :
 성 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12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를 「관리법」 제6조의2」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운용에 관하여”를 “운용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2조제4호 중 “제2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을 “운용관리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를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구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을 “도시재생경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5급이상”을 “5급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옥외광고관련”을 “옥외광고 관련”으로, “자로서 당해”를 “사람으로서 해당”으로, “있는”을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하여 임명된 자”를 “따라 임명된 사람”으로,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를 “위원에 계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연”을 “해당연”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40일전”을 “40일 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80일이내”를 “8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

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예에 의한다”를 “예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무
회계규칙」”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 - 15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 10. 07.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일원
3. 면적 또는 규모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81호선)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81	20	국지 도로	1,020	광로2-4호선 (가좌동602-8)	광로3-9호선 (가좌동173-387)	일반 도로	-	1988.11.25 (인고 제1406호)	
변경	중로	1	81	20	국지 도로	1,190	광로2-4호선 (가좌동602-8)	광로3-9호선 (가좌동173-191)	일반 도로	-		선형 및 중점변경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중로1-81	중로1-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형 변경 ○ 연장(L) = 1,020m → 1,190m ○ 종점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정 : 가좌동 173-387 - 변 경 : 가좌동 173-1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개설도로의 선형변경을 통해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와 공업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4. 지형도면 : 게재생략(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열람 가능)

보상계획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신현동 회화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중 주민 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위하여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0. 07.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의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시행지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비고
신현동 회화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2015년 ~ 2019년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33-11번지 일원	면적 : 64,600㎡(964세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 보상계획

- 보상절차 : 보상계획열람공고→감정평가→보상금산정→보상협의(대면협의)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협의성립 시), 수용재결(협의불성립 시)
- 보상금 산정방법 : 감정평가업자(2인)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 단, 감정평가업자 추천 시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당해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업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추후 개별통지
- 보상금 지급방법 :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개인 은행계좌로 지급

3.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이의 신청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5. 10. 07. ~ 10. 21.(15일간)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560-4768)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3층(심곡동, 경인빌딩)]
-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으신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열람장소에서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대상 내역

- 토지 및 물건(세부내역 붙임 참조)

위 치	지 번	비 고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33-3, 133-10, 133-11 (건축물 3동/27세대)	

5. 기타사항

- 협의절차 및 방법 등은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 완료 후 보상액이 산정되면 보상협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협의기간,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 정확한 통지를 위하여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면 사업시행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소유자 부재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560-47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각 1부. 끝.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1367호

인천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제안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5. 10. 0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변경 없음)
3. 도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획 지		
		위치	면 적(m ²)				위치	면 적(m ²)	
A-1	9	7	605.4		A-1	9	7-1	273.3	2획지로 분할
							7-2	332.1	
A-1	58	7-2	339.8		A-1	58	7-2	339.8	2획지로 분할 (합병 후 분할, 획지선 변경)
		8	384.9				8	384.9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변경 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7.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 : 열람 장소에 비치

8.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5772)